

의안번호	2200628
의 퇴 인	김영배 의원
회 답 일	2024. 7. 4.
추계번호	24F10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율 범위 상향 등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율 범위를 상향하고 재산세 감면을 항구화함에 따라 지방세는 2025년 181억원, 2029년 390억원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1,376억원(연평균 27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취득세는 2025~2026년간 총 206억원(연평균 103억원) 감소
- 재산세는 2025~2029년간 총 1,170억원(연평균 234억원) 감소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취득세·재산세,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제47조의 2)	-181	-259	-234	-312	-390	-1,376	-275
- 취득세	-103	-103	-	-	-	-206	-103
- 재산세	-78	-156	-234	-312	-390	-1,170	-234

주: 1. 향후 5년간의 세수효과를 추계한 결과로, 제시된 기간 이후로도 재정수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
2. 항목별 연평균 금액은 세수효과가 발생한 기간을 대상으로 계산함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 범위를 상향 - 취득세* 감면율: (현행) 3~10% (개정안) 10~20% - 재산세** 감면율: (현행) 3~15% (개정안) 15~30% *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2018년 12월 31일까지 인증받은 건축물 ○ 재산세 감면의 항구화 - (현행) 2018년까지 인증 (개정안) 기한을 삭제하여 감면 항구화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47조의2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이 2024년 말 통과되어 2025년부터 시행될 것을 전제로, 세수 효과는 2025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정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상향 등의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상향의 세수효과는 감면율이 현행 대비 2배 증가한다고 가정
 - 법률에서는 범위만 규정하고 녹색건축 인증등급, 에너지효율 등급별 개별 감면율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만으로는 구체적인 감면율 상향 수준을 알 수 없으나, 최고 감면율의 상향 수준을 고려하여 감면율이 일괄 2배로 상향된다고 가정 후 추계
 - 취득세 감면은 2022년 감면실적이 향후 유지된다고 전제하며, 감면율이 2배로 상향되는 효과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세수효과 추계
 - 재산세 감면율 상향 및 감면 항구화에 대한 세수효과는 2018년 재산세 감면 실적(39억원)의 2배가 매년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추계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2018년 인증 건축물에 한해 1년간 시행되었으며, 감면실적도 2018년 39억으로 한 해만 집계됨
 - 감면율이 2배 증가할 경우, 재산세 감면은 2018년 실적(39억원)의 2배인 78억원 수준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며 녹색건축 인증 후 5년간 재산세 감면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추계

3. 상세 추계내역

(1) 제도 개요 및 실적

□ (개요)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 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이 ‘우수’ 등급 이상인 건축물
- 내용: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 감면율: 녹색건축 인증등급, 에너지효율 등급별로 상이한 감면율을 적용

[표 2]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율

(단위: %)

	녹색건축 인증등급	에너지 효율등급	감면율 범위 (법률규정)	시행령 규정
취득세 감면	최우수	1+등급 이상	3~10	10
	우수	1+등급 이상		5
재산세 감면	최우수	1+등급 이상	3~15	10
		1등급		7
	우수	1+등급 이상		7
		1등급		3

자료: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참조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감면실적)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2018~2022년 취득세·재산세 감면 실적은 다음과 같음

- 취득세 감면 실적은 2018년 243억원에서 2022년 103억원으로 감소
- 재산세 감면 실적은 2018년 39억원으로 한 해만 집계

[표 3]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실적: 2018~2022년

(단위: 억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취득세	243	239	199	183	103
재산세	39	—	—	—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년도

(2) 추계방법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2022년 감면액(103억원)이 향후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감면율이 2배 증가하는 효과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세수효과 추계
 - 개정안만으로는 구체적인 감면율 상향 수준을 알 수 없으나, 감면율이 일괄 2배로 상향된다고 가정하고 추계

[표 4]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 전망: 2025~2026년
(단위: 억원)

	2025	2026
현행(A)	103	103
개정안(B)	206	206
감면액 증가(B-A)	103	10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감면율 2배 상향에 따라 매년 78억원 발생하며, 녹색건축 인증 후 5년간 감면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세수효과 추계
 - 39억원(2018년 재산세 감면액) × 2(공제율 상향효과 반영) = 78억원

[표 5]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액 전망: 2025년~
(단위: 억원)

감면시점 인증시점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
2025	78	78	78	78	78		
2026		78	78	78	78	78	
2027			78	78	78	78	...
2028				78	78	78	...
2029					78	78	...
2030						78	...
계	78	156	234	312	390	390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추계결과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율 범위를 상향하고 재산세 감면을 항구화함에 따라 지방세는 2025년 181억원, 2029년 390억원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1,376억원(연평균 27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6]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취득세·재산세,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제47조의 2)	-181	-259	-234	-312	-390	-1,376	-275
－ 취득세	-103	-103	－	－	－	-206	-103
－ 재산세	-78	-156	-234	-312	-390	-1,170	-234

주: 1. 향후 5년간의 세수효과를 추계한 결과로, 제시된 기간 이후로도 재정수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
2. 항목별 연평균 금액은 세수효과가 발생한 기간을 대상으로 계산함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이정훈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정훈	02-6788-4837	nororand@assembly.go.kr